

1. 개정 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26.7.7., 시행 '27.1.8.)됨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 위탁(안 제9조제4항)

「악취방지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 ③ (생략)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2. (생략) <u><신설></u>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2. (현행과 같음) <u>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 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u>